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※ 추가선택품목 신청서		-	- 견본주택 비치
	○	※ 자금조달계획서		-	- 견본주택 비치
	○	특별공급신청서	본인		- 견본주택 비치, 인터넷청약('청약Home'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개인정보활용동의서/ 무주택서약서	본인		- 견본주택 비치
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	-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(현장접수자에 한함) -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- 국가유공자, 철거민, 도시재생부지제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
	○	신분증	본인	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
	○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	본인		- 본인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,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
	○	인감도장	본인	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 시 제출생략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	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	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속 직계비속		-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- 직계존속,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
	○	복무확인서	본인		-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	○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		- 견본주택 비치
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		-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거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자녀		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	-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	- 견본주택 비치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	- 입양의 경우
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	-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 · 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"상세"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	-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"상세"로 발급
부적격 통보 받은 자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	-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제출용)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	- 본인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
	○	위임장	본인	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○	신분증	대리인	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19)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